

중국 《전신법》 제정동향 및 주요 이슈 분석

연구원 이 석 우*
책임연구원 공 영 일**

최근 중국정부는 중국이 통신대국(通信大國)에서 통신강국(通信強國)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통신시장 운영원칙과 공정한 룰(rule)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전신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신법 제정이 이루어질 경우 중국 통신시장 개방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국내 통신서비스사업자들의 진출기회도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고에서는 중국 전신법 제정 동향을 정리하고 전신법 주요 이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국 통신서비스시장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조망하도록 한다.

목 차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서 론 II. 중국 통신서비스시장 구조 변천 및 경쟁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국 통신서비스시장 구조 변천 2. 주요 주장별 경쟁상황 III. 중국 전신법 제정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 경 2. 전신법 제정 추진 경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V. 전신법 주요 이슈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신사업 허가제도 2. 상호접속 3. 통신요금 4. 사용자 권익보호 5. 보편적서비스 6. 국가 통신관리감독기구 V. 평가와 향후전망 |
|--|--|

I. 서 론

중국의 통신서비스시장은 높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매년 고도성장을 보여 왔으며, 2003년 말 현재 유선전화 가입자와 이동전화 가입자가 각각 2억 6,330만명과 2억 6,869만명을 기록함으로써 가입자 기준으로 세계 1위의 시장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통

연락처: * 국제연구협력단 연구원 (02) 570-4343, leesw@kisdi.re.kr

** 국제연구협력단 책임연구원 (02) 570-4141, okay7@kisdi.re.kr

신서비스시장의 고도성장에는 1994년 우전부¹⁾ 전신총국의 China Telecom으로의 분리를 시작으로 한 통신사업의 구조개편과 경쟁도입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시장지배적사업자²⁾는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타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거부하거나 중단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소비자의 권익은 무시당하였다. 또한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 또는 개인에 의해 기초통신망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었으며 이로 인해 중복투자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통신시장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정비가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라고 판단한 정보산업부는 2000년 중화인민공화국전신조례(이하 '전신조례')를 제정하였다. 전신조례 이전의 중국 통신시장이 전적으로 정부의 계획과 판단에 의해 운영되던 계획경제 지향적인 시장이었다면 전신조례 이후의 시장은 적어도 시장경제로의 이행하기 위한 법·제도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전신법 제정 이전의 과도기적 성격을 가진 전신조례는 세계 최대시장으로 부상한 중국 통신시장 규모와 다수 사업자들간의 다양하고 복잡한 경쟁양상을 수용하는데 한계를 드러내 왔다. 전신조례의 법적구속력 미비로 인해 상호접속 거부 등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횡포는 줄어들지 않았다. 또한, 중국의 WTO 가입은 통신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룰(rule)을 규정하고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전신법 제정에 대한 요구사항을 담고 있었다. 통신 주무부서인 정보산업부는 이러한 국내의 환경을 고려하여 2001년부터 전담반을 구성하여 전신법 초안작성에 들어갔으며 2003년에 마련된 초안을 국무원에 제출한 상태이다. 이 법안은 인민대표회의를 거쳐 2005년 하반기에 태동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 전신법이 통과되어 제정될 경우, 중국 통신시장의 개방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국내 통신서비스사업자들의 진출기회도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고에서는 중국 전신법 제정 동향을 정리하고 전신법 주요 이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국 통신서비스시장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조망하도록 한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중국 통신서비스 시장 구조 변천과 주요 통신시장별 경쟁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전신법 제정은 현행 중국 통신서비스 시장의 구조와 경쟁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신시장 전반에 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Ⅲ장에서는 중국 전신법 제정 배경과 추진경과를 살펴보고 현재 전신법 초안의 주요 내용을 주요 이슈별로 분석한다. 끝으로 중국 전신법 초안에 대한 평가와

1) 현 정보산업부

2) China Telecom을 의미함

향후 전망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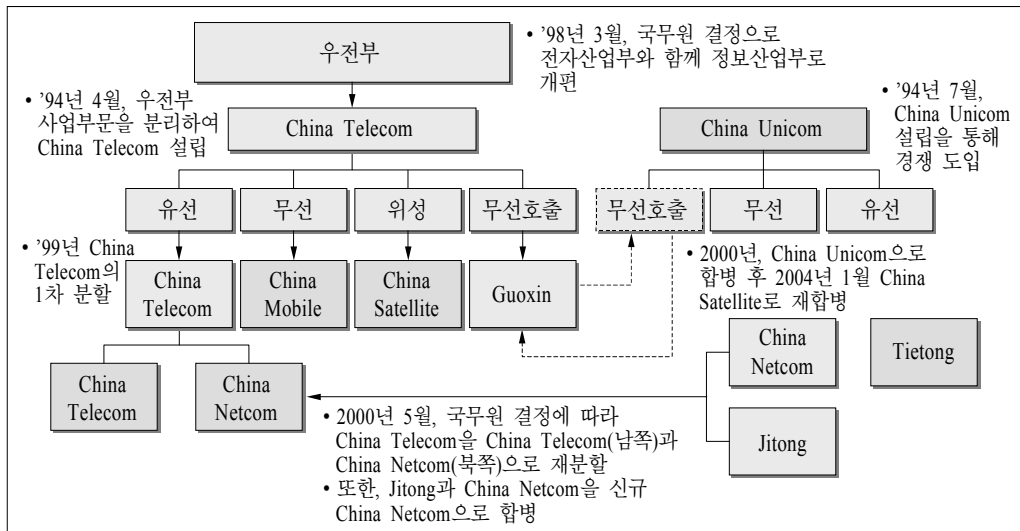
II. 중국 통신서비스시장 구조 변천 및 경쟁상황

1. 중국 통신서비스시장 구조 변천

중국은 기존에 우전부 사업부문이 운영하던 통신사업을 1994년 China Telecom 설립을 통해 China Telecom이라는 공기업에 이관하였고, 동시에 China Telecom의 경쟁자로 China Unicom을 설립함으로써 경쟁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모든 통신서비스시장에서의 China Telecom 독점력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경쟁 도입의 성과는 매우 미미했다.

이에 따라, 정보산업부는 1999년 China Telecom의 독점력을 약화시키고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China Telecom을 China Telecom(유선부문), China Mobile(이동전화부문), Guoxin(무선호출부문), China Telecommunications Broadcast Satellite(위성부문)의 4개 회사로 분할하는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제2사업자인 China Unicom의 성장이 두드러지기 시작했으며 Jitong, China Netcom, China Railcom 등 신규사업자들이 인터넷전화시장에 진입함으로써 경쟁이 진일보 되었다.

(그림 1) 중국 통신서비스시장 구조 변천



한편, 2001년 말 중국정부는 유선전화부문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인 China Telecom을 2002년 1월부터 영업지역을 남북으로 양분하여 북쪽은 China Netcom이 남쪽은 China Telecom이 운영하게 하는 결정을 내렸다. China Telecom의 재분할은 새로운 경쟁정책을 의미한다. 유선전화시장내 사실상의 독점적사업자인 China Telecom의 분할을 통해 독점적 폐해의 소지를 제거하고 경쟁활성화를 통해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려는 중국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중국 통신서비스시장은 China Telecom, China Netcom, China Unicom, China Mobile, China Railcom, China Satellite 등 6대 통신사업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China Telecom의 재분할로 인한 경쟁효과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시내전화시장에서 China Telecom과 China Netcom의 지역독점양상을 보이고 있다.

2. 주요 시장별 경쟁상황

가. 시내전화

중국의 시내전화시장은 1999년 China Unicom이 시장에 진입하기 이전까지 China Telecom에 의해 독점되어 왔다. China Unicom의 시장 진입으로 인해 형식적으로 경쟁체제를 갖추었으나 2001년까지 China Telecom의 시장점유율은 99%를 상회하는 등 실질적인 독점체제가 지속되었다.

그러나, 2002년 China Railcom의 시장진입과 China Telecom의 재분할 등으로 인해 커다란 구도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China Telecom의 재분할은 시내전화부문을 넘어서 중국 전체 통신시장의 경쟁구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중국정부가 China Telecom과 China Netcom의 영업지역에 대한 상호진입을 허용했다는 것이다. 이는 China Telecom의 분할이 단순한 지역적 분할이 아닌 경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결정임을 의미한다.

2002년 말 현재 China Telecom은 1억 3,300만명의 시내전화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China Netcom은 7,744만명, China Railcom은 328만명의 시내전화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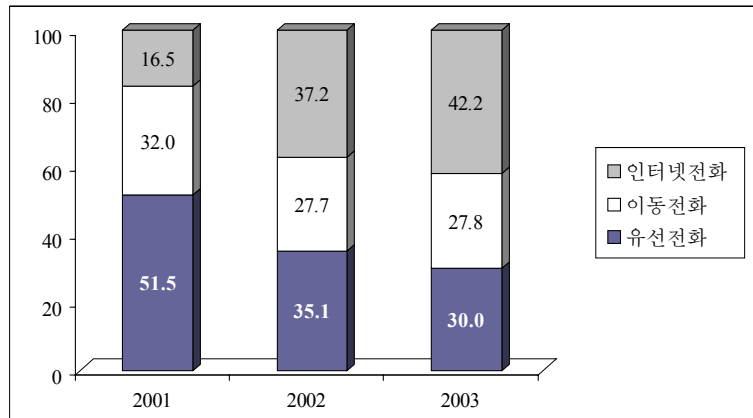
나. 장거리전화서비스시장

중국 장거리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체는 유선전화, 이동전화, 인터넷전화로 구분되며 최근 인터넷전화의 이용이 크게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장거리전화 통화량 구성을 살펴보면 2001년에는 유선전화 통화량이 5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이동전화와 인터넷전화는 각

각 32.0%, 16.5%를 차지하였으나, 2002년과 2003년에는 인터넷전화 통화량이 각각 37.2%, 42.2%를 차지함으로써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2) 장거리전화 매체별 통화량 비중 추이

(단위: %)



중국의 장거리전화시장은 시내전화시장과 마찬가지로 China Telecom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China Unicom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사업이 부진한 상황이다. 한편, China Telecom의 분할로 China Netcom과 China Railcom이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기존 China Telecom의 독점력은 상당부분 잠식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공통점은 중국의 장거리전화시장, 특히 국제전화시장이 인터넷전화서비스³⁾에 의해 상당부분 시장잠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확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 China Telecom, China Unicom, China Netcom, China Mobile, China Railcom 등 5개 사업자가 인터넷전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 이동전화시장

중국에서 이동전화서비스는 1987년 광둥성에서 우전부에 의해 처음 도입되었다. 도입당시에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제공되었으나, 1994년부터 순차적으로 GSM 디지털방식으로 전환되었다. 1995년 China Unicom의 진입으로 인해 China Telecom의 독점체제에서 경쟁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1999년 China Telecom의 이동전화 사업부문이 China Mobile로 분리, 독립되었다. 한편 1995년 7월에는 당시 우전부와 인민해방군이 합작

3) Phone to Phone 서비스를 의미함

으로 장성망공사를 설립하였으며 장성망공사는 CDMA방식의 이동전화서비스망을 구축하고 북경, 서안, 상해, 광주 등지에서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2001년 1월 China Unicom으로 흡수 합병되었다.

2003년 말 현재 China Mobile의 이동전화 가입자수는 전년대비 27.9%가 증가한 1억 7,650만명을 기록하였으며 China Unicom은 전년대비 35.2%가 증가한 9,219만명의 가입자를 기록하였다. 가입자기준으로 China Mobile이 65.7%, China Unicom이 34.3%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China Mobile은 GSM방식의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China Unicom은 GSM방식 이외에 2002년 1월부터 CDMA방식의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China Unicom의 CDMA서비스 가입자는 2003년 말 현재 1,906만명을 기록함으로써 세계 제2위의 CDMA사업자로 부상하였다.⁴⁾

Ⅲ. 중국 전신법 제정 동향

1. 배 경

중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기반으로 중국 통신시장은 세계 최대 통신시장으로 성장하였으나, 법제도 기반의 취약성으로 인해 성장잠재력 훼손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00년 9월 국무원령으로 전신조례가 제정되어 통신시장을 규율하고 있으나 중국 통신시장 규모와 복잡성을 수용하는데 한계를 노출해 왔다. 당시 전신조례의 제정은 사실상 China Telecom이 독점하고 있는 통신시장에서의 경쟁체제의 도입과 독점타파에 가장 무게가 많이 실려있었다. China Telecom이 남북으로 분할되고 China Unicom, China Mobile 등 경쟁상대의 빠른 성장으로 현재 중국 통신시장은 China Telecom, China Netcom, China Unicom, China Mobile, China Railcom, China Satellite의 6대 통신사업자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국면이 되었다. 이러한 통신시장환경의 변화는 당초 전신조례 제정시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어서 현재의 통신시장을 관리감독하며 규정짓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중국정부는 시급히 전신조례를 대체하여 시장을 관리감독하고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2001년 전신법 제정을 위한 전담팀이 발족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게 되었다.

그리고 중국정부는 중국이 통신대국(電信大國)에서 통신강국(電信強國)으로 변모하기 위

4) 제1위 사업자는 미국의 Verizon Wireless로 3,6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

해서는 통신시장 운영 원칙과 공정한 룰(rule)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WTO가입으로 인한 국제통신시장과의 유기적인 융합과 외국 자본·기술의 유입을 위해서는 공평하고 공정한 통신 운영원칙과 통신관리 감독 규범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도 중국 전신법 제정 추진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신법 제정에 대한 이러한 대내외적 요구, 통신서비스산업의 건강하고 질서있는 발전을 위한 규범 제정에 대한 필요성 인식 등으로 중국정부는 전신법 입법화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경주해오고 있다.

2. 전신법 제정 추진 경과

중국정부는 1980년부터 전신법 제정을 추진해 왔으며 '88년, '93년, '98년에 입법화 시도가 있었으나 행정부처간 이해관계 조정에 실패함으로써 법 제정은 계속 지지부진해 왔다. 그 이후 2000년에 들어서 정보산업부에서는 전신조례를 제정하고 2001년에는 전신법 제정을 위한 전담팀이 구성되면서 법 제정이 본격화되었다. 2002년 11월 전신법 초안 작성을 완료하고 이해관계자들과의 의견조율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 6월 또는 8월에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이하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전신법 초안을 심의할 예정으로 있다. 현재는 전신법(제3차 초안)에 국무원 42개 부처 위원반의 의견을 수렴하여 4월초에 전신법(심의회승부안)이 완성되어 국무원 법제반에 심의를 위해 초안을 제출한 상황이다. 당초 입법 계획에 따르면 전신법 초안은 6월 전에 기초작업을 마치고 6월 혹은 8월에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출한 후 심의를 거친 후 제정하도록 되어 있다.

전신법은 위임입법⁵⁾으로 정보산업부에서 초안을 작성, 이를 국무원에 제출하여 심의, 이를 전인대에서 논의하여 통과시킴으로 공식 선포된다. 전인대에서는 내부 작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전인대 법제위원회로 인계하고 내용 중 과학기술에 해당되는 부분은 관련분야 위원회의 의견을 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상무위원회에서 정식으로 통과할지 혹은 전인대에서 통과할지 여부를 토론하는데, 상무위원회에서 동 법률의 중요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다. 만약 상무위원회에서 전신법 제정이 시급한 것이고 쟁의사항이 크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상무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바로 통과할 수도 있다. 만일 전체대표에서 의견

5) 중국 입법법에 따르면 입법 방식에는 여러 방식이 있음

- 1) 행정입법: 해당 국무원 행정부처에서 직접 입법
- 2) 위임입법: 국무원에서 해당 부처에 입법을 위탁
- 3) 입법부처에서 입법반을 조직하여 입법

이 있으면 매년 3월에 열리는 전인대에서 토론을 거쳐 통과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표 1〉 전신법 제정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

'01년 4월	정보산업부, 전신법 초안작성영도소조, 전신법 초안작성공작소조, 전신법 초안작성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02년 11월	전신법 초안 작성
'03년 1~3월	미국, 일본, 독일, 한국 및 대만, 홍콩 등의 전신법을 비교 연구
'03년 4~6월	시장진입과 보편적서비스 등 16개 과제를 연구
'03년 7~10월	정보산업부 내부부처, 통신사업자 등 각계의 의견 수렴
'04년 3월	국무원 42개 부처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전신법 초안 수정 및 정리
'04년 5월	정보산업부 전신법 입법좌담회 개최
'04년 6월/8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전신법 초안 심의 예정
'05년	전신법 공포 예정

IV. 전신법 주요 이슈분석

1. 통신사업 허가제도

중국 통신업무의 분류는 기존까지는 2000년에 제정된 전신조례의 규정에 따라 기초통신업무와 부가가치통신업무로 분류하고 있다. 즉, 공공 네트워크 기초시설을 보유하고, 공공 데이터전송 및 기본 음성통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통신업무와 공공 네트워크 기초시설을 이용하여 통신 및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가치통신업무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 전신법에서는 분류방식을 사업 내용에 따른 분류가 아닌 사업 범위에 따라 제1종 통신업무와 제2종 통신업무로 분류하고 있다. 제1종 통신업무는 직접 통신 전송, 교환시설 및 기타 보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와 통신 전송 등의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해주는 업무를 말한다. 제2종 통신업무는 다시 특수 제2종 통신업무와 일반 제2종 통신업무로 분류하는데, 특수 제2종 통신업무는 통신전송, 교환 등의 시설을 임차하여 시내, 장거리, 국제 음성통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와 국가 통신관리감독기구의 공고를 거친 기타 통신서비스 업무를 말하고, 일반 제2종 통신업무는 특수 제2종 통신업무 외의 기타 통신업무를 말한다.

이러한 통신업무의 분류는 이전 전신조례에서는 정보산업부가 각각의 업무 목록을 정리, 제정하고 있으나, 이번 전신법에서는 사업 내용이 아닌 사업범위에 따른 분류를 택하고 있어 별도의 업무 목록을 제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표 2〉 통신업무 분류

전신조례 분류	기초통신업무	○ 공공 네트워크 시설을 보유하고 공공 데이터전송 및 기본 음성통화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업무
	부가가치 통신업무	○ 공공 네트워크 기초시설을 임차하여 통신 및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업무
전신법 분류	제1종 통신업무	○ 직접 보유하고 있는 전송시설, 교환시설 및 기타 보조 시설로 사회 대중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혹은 통신전송 등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해서 사용하게 하는 업무
	제2종 통신업무	○ 특수 제2종 통신업무: 통신전송 등 시설을 임차하여 시내, 장거리, 국제 음성통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및 국가 통신관리감독 기구의 공고를 거친 기타 통신업무 ○ 일반 제2종 통신업무: 특수 제2종 통신업무 외의 기타 통신업무

통신사업자가 중국 통신시장에서 통신사업을 개시하고자 할 때는 통신사업 경영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기존에는 각 영업 항목별로 경영허가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빠른 통신시장 환경의 변화와 통신시장 규모의 확대로 나날이 새로운 통신사업이 생겨나면서 각각 업무에 대해 경영허가증을 발급하다 보니 너무 많은 경영허가가 존재하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의 문제도 야기되었다. 이번 전신법에서는 제1종 통신사업자와 제2종 통신사업자에 따라 허가제도를 다르게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종 통신사업자와 특수 제2종 통신사업자는 특수허가제도를 실시하고, 일반 제2종 통신사업자는 일반허가제도를 실시하는데, 특수허가제도는 자격조건이 일반허가제도에 비해 복잡하고 요구사항도 높고 각각의 업무범위에도 차이가 있다.

기존의 전신조례에서는 통신업무 중 기초통신업무의 통신사업자 조건으로 합법적인 법인으로 국내의 지분이 전체의 51%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전신법에서는 새로 외상투자통신기업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었는데, 외국 투자자는 중국 내의 투자자와 함께 중외합작경영형식으로 통신기업을 설립하여 통신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단, 지분율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된 바는 없다.

이번 전신법에서는 통신사업자의 통신업무 금지행위를 규정하는 조항이 새로 추가되었는데 공정경쟁과 사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 통신사업에 대한 금지행위

1. 통신업무 시장에서의 우세한 지위를 이용하여 경쟁자 혹은 개인에게 불합리한 요구를 하거나 타 사업자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광고 혹은 기타 방법을 통해 서비스의 성능, 기능, 용도, 업무 범위, 요금표준 및 유효기간 등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짓 선전행위
3.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하지 않은 수단으로 경쟁상대의 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4. 경쟁상대의 배제를 목적으로 원가 이하 가격채택 등의 방법으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당한 경쟁 행위
5. 타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통신서비스의 선택을 제한하거나 지정한 통신서비스를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6. 사용자가 지정된 통신설비를 구매하도록 제한하거나 혹은 사용자 본인이 구비한 통신설비의 사용을 거절하는 행위
7. 거짓 정보를 날조하거나 배포함으로써 경쟁상대의 상업적 신용을 훼손시키는 등 부당한 수단으로 타 사업자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어지럽히는 행위
8. 계약 혹은 비 계약 형식으로 연합하여 타 통신사업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하고 정상적인 시장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9. 독단적으로 기존에 획득한 통신업무 경영을 중지하는 행위
10. 독단적으로 경영허가증을 양도, 증여, 매매 혹은 임대하거나 국가 통신관리감독기구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기타 방식으로 형태를 변형하여 통신업무 경영권을 양도하는 행위
11. 본 법과 국가 통신관리감독기구에서 인정하는 기타 금지 행위

〈표 4〉 통신사업 허가에 대한 전신조례와 전신법의 비교

	전신조례	전신법
업무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 내용에 따른 분류 - 기초 통신업무 - 부가가치 통신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 범위에 따른 분류 - 제1종 통신업무 - 제2종 통신업무 ※ 특수 제2종 통신업무와 일반 제2종 통신업무로 분류
시장진입 방식	○ 사업 항목별 경영허가증 발급	○ 사업자별 분류에 따른 경영허가증 발급

2. 상호접속

2000년 전신조례가 발표되었을 당시에는 중국 통신시장의 상황이 지금처럼 복잡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서 상호접속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내용의 규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여러 대

형 통신사업자간의 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서 통신사업자간의 상호접속 분쟁도 거의 매일 발생하고 있어, 기존의 전신조례로는 도저히 현재의 다양한 상호접속 분쟁을 규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1998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보산업부에 보고된 상호접속 악성 분쟁의 건수는 540여 건에 달하고 있고 이로 인해 최소 1억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으며 그 피해액만도 직접손실 10억 위안과 간접손실 20억 위안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⁶⁾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현재의 관리감독수단으로는 도저히 그 역량이 따르지 않고 있고, 또 현재의 법규상에서는 수많은 법적인 맹점이 있어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관리감독 기관에서도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들 통신사업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전신법에서는 상호접속에 대해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며 상호접속의 의무, 상호접속 비용정산, 상호접속 쟁의 해결, 상호접속의 금지규정 등 매우 자세하게 규정짓고 있다.

상호접속에 있어서 전신법에서는 기술적인 가능성, 경제적인 합리성, 공평공정, 상호협력 및 시의유효성에 따른 상호접속을 원칙으로 하고있다. 전신조례에서의 내용에서 추가로 시의 유효성이 추가가 되었는데, 통신사업자간 상호접속 요청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상호접속의 주요 대상으로는 전신조례에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호접속 제공의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으나, 전신법에서는 제1종 통신사업자와 시장 지배적 제1종 통신사업자가 상호접속 제공의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전신법에서는 상호접속을 위해서 비 차별대우, 투명화의 원칙에 따라 상호접속작업 절차, 상호접속 시한, 상호접속 업무 목차 및 비용 등 상호접속 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국가 통신관리감독기구의 기준을 거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상호접속에 대한 쟁의가 발생하였을 경우 기존에는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문이나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통신관리기구에 협조를 신청하고, 45일 이내에 협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공개 논증을 거쳐 강제로 상호접속을 실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전신법에서는 쟁의 해결을 위해 통신관리감독기구에서는 “상호접속쟁의행정재결위원회”를 조직하여 상호접속 쟁의 당사자의 재결신청을 접수하고 행정재결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홀수로 구성하며 2/3 이상 표결 통과 후 행정재결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기한은

6) 「電信法 加速出爐 四大焦點問題急待解決」, 『中國經濟時報』, 2004. 3. 3

45일 이내에 재결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수 상황에서는 90일 까지 연장의 가능하다. 만일 위원회의 행정재결에 일방 혹은 쌍방 모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 재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도록 되었다.

<표 5> 상호접속에 대한 금지규정

1. 타 통신사업자의 상호접속 요구에 대한 거절 및 고의 연기
2. 정당한 사유없이 타 통신사업자의 합법적인 업무에 대한 비 개방 및 연기
3. 기술적인 수단을 통한 고의적인 망간 통신장애 조성
4. 독단적인 상호접속 중단
5. 독단적인 통신 네트워크 및 설비의 조정을 상대방에 불통지
6. 통신망간의 상호접속 중 규정외의 추가 비용 징수
7. 정당한 사유없이 망간 결산비의 지불 거부 및 연체 혹은 망간 결산을 방해하는 기타 행위
8. 망간 통신장애 발생 시 누장 대처 및 문제해결
9. 국가 통신관리감독 기관의 관련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

원활한 상호접속을 위해 각 통신사업자들은 상호접속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현재 통신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통신사업자간의 기술적인 수단을 활용한 망간 통신장애, 채무연체 및 정당한 사유 없는 상호접속비용의 지불거부, 망간 통신사고에 대한 누장 대처 등의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표 6> 상호접속에 대한 전신조례와 전신법의 비교

	전신조례	전신법
제공의무 대상	○ 시장지배적 사업자	○ 제1종 통신사업자 ○ 시장지배적 제1종 통신사업자
상호접속 규정의 공개여부	○ 내부적인 규정 제정	○ 규정 제정 후 공개
상호정보교환	○ 해당사항 없음	○ 상호접속과 관련된 상호 정보의 제공 및 비밀 유지 의무
상호접속 시한	○ 해당사항 없음	○ 통신관리감독기구에서 규정하는 시한내에 상호접속을 제공 및 실시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없이 시한연기 불가

	전신조례	전신법
상호접속 연결방법	○ 상호 망간의 직접연결	○ 상호 망간의 직접연결 ○ 제3자 망을 통한 간접연결 - 제1종 통신사업자 망을 제3자 망으로 사용하여 상호접속 가능
설비의 공유	○ 해당사항 없음	○ 제1종 통신사업자는 보유하고 있는 선로, 전주, 통신파이프, 기계실 등 통신시설의 공동사용 가능
쟁의 해결	○ 주체: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문 및 각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구 ○ 시한: 45일 이내 협의 ○ 협의 실패시: 공개논증을 통한 강제 시행	○ 주체: 통신관리감독기구가 조직한 상호접속쟁의행정재결위원회 ○ 시한: 45일 이내 해결 ※ 특수상황에서는 90일까지 연기 ○ 협의 실패시: 재심의 요청 및 행정소송 제기

3. 통신요금

통신요금부분은 현재 정부, 통신사업자 및 일반 사용자들 모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기존에는 통신요금의 종류에 대한 정의와 표준요금 제정의 방법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전신법에서는 요금정책, 통신요금 관리감독 기구, 가격 비준, 부당행위 금지, 사용자 및 사업자 권리 및 의무 등에 대해 자세히 규정짓고 있다.

기존의 통신요금 정책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정부정가, 정부지도가, 시장조절가로 구분하여 각 통신업무 성격 및 시장상황에 따라 각각 정부정가, 정부지도가, 시장조절가를 시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신법에서는 통신사업의 발전과 시장의 경쟁상황에 따라 점차 정부정가, 정부지도가에서 시장조절가로 이행을 촉진하고 있다. 이에 통신사업자들에게 더 많은 자체 가격책정의 자율을 부여하고 있으며, 대신 다양한 통신요금에 대한 규정을 두어 이를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요금원칙은 통신사업자들의 가격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통신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통신시장경쟁이 충분한 통신사업에 대해서는 시장조절가를 시행하여 통신사업자 스스로 통신요금 징수항목, 통신요금 표준 및 산정원칙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사용자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장경쟁이 충분하지 못한 통신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정가나 정부지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통신사업자는 스스로 통신요금 징수 표준을 결정할 때 적절한 요금산정 시스템을 사용하여

요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요금산정 시스템은 통신관리기구에 제정한 관련 통신사업표준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요금산정 시스템을 통해 요금징수항목과 통신요금의 표준, 요금산정 원칙을 통신관리감독기구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하는데, 전국적이고 각 성간의 통신서비스에 대한 요금은 국가 통신관리감독기구에 보고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에서의 통신서비스에 대한 요금은 각 지역별 통신관리기구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통신사업자의 통신요금 산정에 있어서 법적으로 자주적인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가격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을 시에는 이를 적발, 고발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갖고 있다. 그리고 통신사업자는 요금징수 항목 및 요금표준과 요금산정원칙 등을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사용자는 이미 공포한 요금징수 항목, 요금표준, 요금산정원칙에 위배하여 요금을 징수하는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통신관리기구는 통신사업자의 통신요금 상황, 통신요금 산정시스템 및 시장판매행위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정부지도가과 정부정가로 통신요금을 제정, 조정할 때에는 가격 공평회를 거쳐야 하는데, 전국적인 통신요금에 대한 내용은 국가 통신관리감독기구에 진행하고 지역적 통신요금에 관련된 내용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등의 통신관리기구에 진행하고하도록 한다.

이번 전신법에서는 통신사업자들의 부당판매행위를 막고자 금지조항을 추가하였다. 이 조항에서는 같은 내용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서로 다른 사용자에게 다른 요금을 징수하거나 정부지도가, 정부정가를 회피하기 위해 서로 다른 통신서비스에 끼워팔기를 하는 행위, 가격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는 행위, 통신사업 운영에 대해 불합리한 교차보조행위, 가격인상 정보를 날조, 배포하여 가격을 상승시켜 통신요금의 지나친 인상을 촉진하는 행위 등 통신서비스 시장에서의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표 7> 통신요금에 대한 전신조례와 전신법의 비교

	전신조례	전신법
요금정책	○ 시장조절가, 정부지도가, 정부정가 시행	○ 정부정가, 정부지도가에서 시장조절가로 이행
사용자 권리	○ 해당사항 없음	○ 요금건의권, 가격소송권
공평회	○ 주최나 해당 지역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 전국적 통신요금내용 - 국가 통신관리감독기구 주최 ○ 지역적 통신요금내용 -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구 주최

4. 사용자 권익보호

이번 전신법에서는 “사용자 권익보호”라는 장을 따로 마련하여 전문적으로 사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규정짓고 있다. 이는 사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으로, 통신사업자의 의무와 사용자의 권리를 함께 규정하여 통신사업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정지었다.

이 중 특히 번호선택권에 대한 부분은 예전부터 계속 논란이 되어왔던 부분이다. 이번 전신법에서도 처음 기초당시부터 “번호이동성”의 내용의 포함여부에 대해 많은 얘기가 있었으나 현재의 전신법 초안에는 “번호이동성”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 다만, 사용자는 통신사업자, 합법적으로 각종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망 진입허가를 취득한 통신단말설비 등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번호이동성”이 가능해야 사용자들에게 진정한 자유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용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전신법에서는 사용자의 선택권, 알 권리, 프라이버시 권리, 그리고 사용자 신고접수기구 설립 및 신고 처리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통신사업자들은 관련내용의 공시 의무, 배상책임 등의 의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통신사업자의 권익을 위해서 사용자들의 요금납부 의무와 배상책임의 면제권을 규정하고 있다.

〈표 8〉 통신사업자 배상책임 면제 항목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신설비장애, 저지로 인해 착오, 지체, 중단 혹은 전송불능 등이 발생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 2. 불가항력적이거나 기술발전으로 인한 교체 등의 이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3.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
|---|

그리고 공공의 이익과 사용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통신관리감독기구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통신사업자에게 책임을 지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와 통신사업자간의 쟁의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해결, 재결을 담당하는 전문 사용자 신고접수기구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통신관리감독기구 및 기타 관련부처에 제소를 하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소자에게 회답해야하며, 특수상황에서는 기준을 얻어 처리시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9> 공공이익 및 사용자 이익 보장을 위한 사항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통신사업자의 서비스방식이 공공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2. 통신사업자의 서비스방식이 적당하지 않고 사용자의 이익에 손해가 되는 경우3. 통신사업자가 통신서비스 제공에 방해가 되는 사고에 대해 신속한 대처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한 경우4. 통신사업자의 계약양식 혹은 조항양식이 사용자의 권익을 훼손하거나 확실히 공평성이 없을 경우 |
|---|

5. 보편적서비스

전신조례에서 보편적서비스 관련 내용은 보편적서비스의 의무 및 원가보상 등의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전에는 중국 통신 보편적서비스는 사실상 China Telecom이 담당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업으로 정부차원에서의 보편적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없었지만, 정부와 기업의 분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보편적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비용보상 없이 계속 서비스 제공을 강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더군다나 지금은 China Telecom 외에 대형 통신사업자들이 많이 생긴 상황에서 China Telecom에만 이러한 의무를 부담지운다는 것도 공평성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전신법에서는 이러한 보편적서비스 실행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보편적서비스 실행을 위한 기금설립의 법적근거를 마련해두고 있다. 즉, 보편적서비스는 기금을 마련하여 이 기금으로 보상하는 체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 기금은 국가 재정부문이 국가 통신관리감독기구와 국가 가격주관부문과 함께 설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편적서비스 기금을 위해 통신 사업자들은 국가 통신관리감독기구에서 공평성, 경제성의 원칙에 따라 분배한 몫의 기금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게는 분담금의 3배~5배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국가 통신관리감독기구는 보편적서비스의 종류와 범위를 결정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통신 보급정도, 정보와 통신기술의 수준, 사회복리의 촉진, 공공이익과 안전보장 등의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편적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선정은 국가 통신관리감독기구의 입찰 혹은 지정의 방식을 통해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우선 입찰의 방식으로 보편적서비스 제공신청을 받는데, 신청 통신사업자가 많을 경우는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낙찰자를 확정하고, 단독 신청하거나 신청 통신사업자가 없을 경우에는 국가 통신관리감독기구에서 제공 능력과 경제성 원칙에 따라 보편적서비스 제공사업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국가 통신관리감독기구

이번에 전신법에서 새로 국가 통신관리감독기구에 대한 장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주관부처의 법률적 권한부여의 문제이다. 이전 전신조례에서는 시장에서의, 시장에 대한 관리규제의 내용만 있을 뿐 이러한 기구 자체의 법률적인 지위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어있지 않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국가 통신관리감독기구인 정보산업부는 전신 주관부처이고 국무원으로부터 행정권한을 부여받았으나 법률적 지위는 없으며, 정보산업부 산하의 통신관리국 역시 아무런 법률적 지위가 없는 것이 되는 셈이다.

현재 다른 분야에서는 상업은행법, 중국인민은행법과 은행관리감독법 등이 있어 관리감독 부문의 직권, 규칙 등을 정한 법률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통신분야에서는 이러한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었다. 이번 전신법의 입법으로 통신관리감독기구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위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통신관리감독기구는 법에 의해 통신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행하고 통신질서를 유지하며 통신사업의 합법적이고 질서있는 발전을 보장한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국가 통신관리감독기구는 통신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11가지 주요 직무를 규정하고 있다.

〈표 10〉 통신관리감독기구의 주요 직무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 통신관리감독 법률, 행정법규를 기초하여 통신업 발전에 관련된 정책과 관련 통신시장 관리감독의 정책, 규장 및 규정을 제정 2. 통신사업자에 대한 허가증 발급과 통신사업자의 업무범위의 심사 비준 3. 전국 통신번호자원의 분배와 관리 4. 통신과 정보서비스 요금정책의 제정과 관리감독 실행 5. 국가 통신망 건설기획 총괄과 사업관리 실행 6. 통신기술표준제정과 관리감독 실행 및 통신설비 망 진입 인증과 관리 7. 통신과 정보안전을 보장하고 국제 통신출입관문국을 심사비준하며 당·정 전용통신, 화제 응급통신과 기타 중요통신의 협조 8. 통신 통계보고표 제정 및 산업정보 발표 및 통신업 통계에 대한 관리감독 실행 9. 통신서비스시장과 통신건설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실행과 법에 의거 위법, 위규행위에 대한 조사 진행 10. 국가를 대표하여 국제표준화조직, ITU 및 기타 정부간 통신조직에 참가하여 관련사항을 처리 11. 법률, 행정법규와 국가에서 규정한 기타 직무 |
|---|

V. 평가와 향후전망

현재 중국 통신서비스시장을 규율하고 있는 전신조례가 제정된 이후 다수의 사업자에 의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며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전신법 제정이전의 과도기적 법규로서의 성격을 가진 전신조례는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법적인 구속력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중국 전신법 제정 움직임은 세계 제1위 통신시장 규모에 걸맞는 법제도 기반을 갖추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되며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보호하고 시장주체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법률적 환경조성 노력으로 평가된다. 또한, 전신법 제정은 행정에 의한 재량적 규제에서 법에 의거한 규제로의 전환을 통해 규제정책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신법이 시장과 기술 환경 변화를 수용하는 제도를 확립하고 공정하고 명확한 시장운영규칙 제정으로 시장 주체간의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중국 통신시장 발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상호접속 규정의 강화, 보편적 서비스 제도의 정비, 허가제도의 단순화 등은 괄목할 만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먼저, 시장진입과 관련하여 전신법에서는 통신사업자들을 통신망 기초설비 보유여부를 기준으로 제1종 사업자, 제2종 사업자로 분류하여 영업허가를 내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영국, 일본, 호주의 허가방식과 유사하다. 이러한 사업자별 허가방식은 기존의 역무별 허가방식에 비해 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탄력적인 대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진전으로 평가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설비보유여부와 제공서비스 두 가지 기준으로 사업자를 분류하고 있다. 설비보유여부에 의해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되며 제공서비스에 의해 기간통신여무를 제공하는 기간·별정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여무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되고 있어 분류체계의 단순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전신법 초안은 상호접속 규정에 매우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통신사업자 수 증가와 시장주도적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빈발로 인한 공정한 상호접속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상호접속 관련 금지규정과 구체적인 분쟁해결방안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상당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다만, 상호접속비용 분담과 정산,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신법이 제정된 이후 조례 등을 통해 마련될 것으로 보이나, 경쟁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신법 초안에서의 요금규제는 상대적으로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남겨두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요금조정을 통한 경쟁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요금만을 규제하고 있는 반면 중국 전신법 초안에서는 전신조례와 마찬가지로 요금제가

시장조절가, 정부지도가, 정부정가(定價) 등 3가지로 구분하여 운영된다. 시장경쟁활성화 정도를 감안하여 시장별로 상이한 요금제를 적용하되 궁극적으로 시장자유요금 지향한다고 밝히고는 있으나, 정부지도가와 정부정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요금산출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업자 요금설정에 정부의 개입여지가 높은 편이다. 국내에서는 '97년 요금 인가대상을 대폭 완화하여 시내전화시장에서는 KT, 이동전화시장에서는 SKT만이 요금규제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사업자는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보편적서비스제도도 변화된 경쟁상황을 반영하여 제1종 통신사업자 모두에게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보편적서비스 제공 비용은 기금을 조성하여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금조성을 통한 보편적서비스 제공 비용 충당방식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채택하는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 및 고시 제정 등을 통해 2000년부터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전신법 초안에는 보편적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제공사업자 지정, 손실보전 및 재원조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통신관리감독기구가 정한다고 되어 있어 이 부분에 관한 내용도 향후 조례형식으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관리감독기구에 대한 장을 추가하여 정보산업부의 법률적 지위를 명시한 것은 통신시장의 규율과 감독권한의 강화를 통해 시장의 불공정행위 및 교란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자하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보산업부 기능이 정책과 규제 기능을 모두 포괄하고 있어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이 공정한 경쟁을 위한 규제를 제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미국, 영국, 호주, 독일, 캐나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은 행정부처에서 규제는 독립기구에서 담당하고 있다.

한편, 전신법 초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감독기구의 권한은 타 부처와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관리감독 권한을 어떻게 분배하고 조정할 것인가가 전신법 입법화에 최대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1980년부터 전신법 제정을 추진해 왔으며 '88년, '93년, '98년에 입법화시도가 있었으나, 관련부처간 이해관계 조정에 실패함으로써 무산된 바가 있다. 통신방송융합 추세확산에 따른 관련 규제정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보산업부가 방송영화TV 총국의 반대를 의식하여 전신법 초안에서 통방융합 관련내용을 대폭적으로 삭제키로 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전신법의 경우는 현행 통신시장의 개혁과 제도개선에 대한 정부내의 공감대가 넓게 확산되어 있어 입법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전신법 입법화가 실현되게 되면 외국 통신사업자의 중국 진출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전신법 입법화는 정책과 규제의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글로벌스탠다드에 근접시키고자하는 중국정부의 의지표명이라는 점에서 국내 통신사업자들도 중국 진출에 대한 관심과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중국 전신법 초안에서도 볼 수 있

듯이 중국 통신시장은 여전히 정부의 통제가 비교적 크게 작용하고 있어 국내와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최근 중국 통신시장에서 이른바 ‘四合二合併方案’⁷⁾이 논의되고 있는 것도 실현성 여부를 떠나 정부의 통신사업자에 대한 통제권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 통신서비스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 수립은 무엇보다도 중국 정부 정책과 규제, 법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에 기반을 두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공영일, 中華人民共和國電信條例의 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0. 11. 1
- [2] 염용섭 외 16인, 「통신요금정책 및 보편적서비스제도의 개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1. 2
- [3] 박종훈·김진기·김봉식·공영일·권오상·이승훈,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주요국가의 통신서비스 정책비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1. 1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1. 12
- [4] 손상영·김도승·이광윤·문준조·정준현·김종길, 「중국 IT관련 법제도 조사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2. 12
- [5] 「電信法 出台遭遇程序難題」, 『IT時代周刊』, 2004. 5. 5
- [6] 「電信法 加速出爐 四大焦點問題急待解決」, 『中國經濟時報』, 2004. 3. 3
- [7] 「電信法 草案三稿完畢 核心問題仍是昔日頑疾」, 『中國經濟時報』, 2004. 4. 7
- [8] 「電信法 出台能否破解三大難題」, 『經濟日報』, 2004. 3. 30
- [9] 「帶号轉网將寫進 電信法 專家認為實現困難」, 『北極星電信新聞』, 2004. 3. 16
- [10] 중국 信息產業部 홈페이지 <http://mii.gov.cn>

7) China Telecom과 China Unicom을 합병하고 China Mobile과 China Netcom을 합병함으로써 국내 통신사업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선진 통신사업들과의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임